

## 01 지평지성 소식

- ‘법무법인 지평지성 순천사무소’ 개소

## 04 법률칼럼

-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유의할 사항은? (최정규 변호사)

## 08 열려라 중국

- 외국투자자의 중국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안전심사제도 실시 (이광선 변호사)

## 13 Vietnam LIVE!

- 정관 자본금 납입 기한 규정 엄격해져... (김주현 변호사)

## 15 ¡Hola! 중남미

- 브라질 현지법인 설립에 관하여 : 법인 형태 결정 및 입지 선정 (이유경 변호사)

## 19 한경비즈니스 기고문

- [Global 트렌드(라오스)] 한·라오스 자본시장 협력 기대 높아져 (이행규 변호사)
- [Global 트렌드(러시아)] 송배전망 정비 등 현대화에 1조 달러 투자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 [Global 트렌드(브라질)] 세계 자동차 메이커 ‘각축장’ 부상 (정 철 변호사)
- [Global 트렌드(베트남)] ‘유년기’ 단계...기업 투명성 높아져야 (한승혁 호주변호사)

## 22 주목! 이 판례

- 장래 예금채권 가압류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전부금】)

## 26 최신법령

- 「상법」 개정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 29 지평지성 단신

- 이춘원 변호사, International Law Office(ILO) 주관의 ‘Client Choice Awards 2011’에서 한국 내 Shipping & Transport 분야의 Winner로 선정
- 최승수 변호사, 한국영산산업협회 주관의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세미나’ 토론 참석

## 31 영입인사

- 이공현 대표변호사
- 김형수 변호사
- 강경운 변호사
- 한재철 변호사
- 구나영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지평지성 소식)

## '법무법인 지평지성 순천사무소' 개소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전국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그 첫 결실로 순천사무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순천에서 법관으로 근무한 후 10여년간 순천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온 김형수, 강경운, 한재철 변호사를 영입하여, 순천, 여수, 광양 등 호남 지역의 고객들에게 종합적이고, 전국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 고객들에게 호남 지역 법률문제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순천사무소를 열게 되었습니다.

순천사무소와 서울 본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순천, 여수, 광양 지역 고객들에게 호남 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소송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기업자문, 국제계약, M&A, 금융·증권, 지적재산권, 건설·부동산, 도산, 공정거래, 노동, 조세, 자원·에너지·환경, 해상·보험 등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더하여,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순천, 여수, 광양 등 호남 지역에 지사와 공장을 두고 있거나 호남 지역에서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서울 고객들에게 현지에서 밀착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성심을 다하여 순천, 여수, 광양 등 호남 지역 기업 및 개인 고객 여러분들과 서울 고객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비즈니스의 성공에 일조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기사]

- 서울경제 - 법무법인 지평지성, 순천사무소 개설 (2011. 3. 15.)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 [담당변호사]



김형수 변호사



강경운 변호사



한재철 변호사

## [순천사무소 개소식]



이공현 대표변호사 인사말



순천사무소 김형수 변호사 인사말



법무법인 지평지성 순천사무소 개소식 (2011. 3. 18.)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주소 및 연락처 · 오시는 길]

- 주소 : (540-330) 전남 순천시 왕지동 870-1 금강타워 3 층
- 전화 : 061-724-2001 | 팩스: 061-725-7604



[Jipyong & Jisung]

(법률칼럼)

##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유의할 사항은?



최정규 변호사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 주요 포털, 오픈마켓, 언론사 등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09년에만 개인정보 12만여 건이 경찰에 제공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수사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통신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공하는 것은 문제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고, 최근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2010헌마439사건).

문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위헌여부를 떠나, ①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②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하였다면 사업자는 면책되는 것인지, ③ 통신자료를 제공한 뒤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 실무상 확립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하급심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가합7287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가합72880 판결). 위 판결 내용을 중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심으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사업자가 유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영장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해지일자"로 국한됩니다.

실무상 수사기관은 해당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자료 일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는 예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위 개인정보 외에 다른 개인정보는 법원의 허가서(통신비밀보호법)나 압수·수색영장(형사소송법) 없이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수사기관의 요청대로 개인정보 일체를 제공하면, 나머지 개인정보들은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셈이 되므로, 사업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별로 수사기관의 요청방법과 절차는 아래와 같은 표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청하면서 개인정보별로 이와 같은 원칙과 기준을 따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종류	수사기관의 요청방법과 절차	근거법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해지일자 (통신자료)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으로 요청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일시, 개시 및 종료시간, 사용도수, 로그기록자료, 위치추적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에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첨부	통신비밀보호법
기타 개인정보	압수·수색영장이 없으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공 불가	형사소송법

(2)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사업자는 면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업자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를 수 있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내용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범죄사실 및 요청 대상자의 관련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정보제공을 거부할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쟁점이 문제된 사건에서 최근 하급심 판결은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해당 범죄와 정보제공 요청 대상자와의 관련성 정도에 대한 판단 등 형사법 영역의 판단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청되는 분야로서 법령에 의해 권한 및 의무가 부여된 기관을 제외한 제3자에게 이러한 판단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신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더욱이 인터넷은 대부분 본인의 성명과 다른 아이디를 사용하여 이용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협력 없이는 개인신원을 파악하기가 곤란한 특징이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하여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그치고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실제적 심사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위 2010가합72873 판결). 위 판결의 입장에 따를 경우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업자는 면책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해당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 현황의 공개를 요청하면 가급적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해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은 개인정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는 그 현황을 열람 또는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위 2010가합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72880 판결). 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통신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만일 이용자에게 통신비밀을 누설하였는지 확인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어렵고,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이나 통신제한조치와 달리 관할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여 사업자가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위와 같은 판단의 주된 근거였습니다.

아직 상급심의 판단이 남은 만큼 위에서 언급된 하급심 판결들이 확립된 법원의 입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문제에 대해 실무상 논란이 적지 않았고, 이에 관해 법원이 "①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② 반면 사업자에게는 수사기관의 요청 사유와 관련성을 실체적으로 심사할 의무는 없으므로, 적법한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면 면책될 수 있다. ③ 다만 사업자가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보 제공 현황은 이용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나름의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Jipyong & Jisung](#)



(열려라 중국)

## 외국투자자의 중국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안전심사제도 실시



이광선 변호사

### 1. 서론

중국 국무원(판공청)은 2011년 2월 3일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수립에 대한 국무원 통지'(이하 '안전심사제도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안전심사제도 통지의 주요내용, 제정 배경 및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2. 주요 내용

#### 가. 안전심사 범위<sup>1</sup>

- (1) 외국투자자가 국내 군수공업, 핵심적이고 민감한 군사시설 주변의 기업 및 국방안전 관련 기타 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경우
- (2) 외국투자자가 국가안전에 관계되는 농수산물, 중요한 에너지와 자원, 중점기반시설, 중점 운송서비스, 핵심기술, 중대 장비제조 등 업종의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실제 지배권을 취득<sup>2</sup>할 수 있는 경우

#### 나. 안전심사 대상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 (1) 외국투자자가 국내 비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증자에 참여하여 그 국내 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할 경우
- (2) 외국투자자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측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 (3)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그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하여 국내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자산을 인수하여 그 자산을 운영할 경우
- (4) 외국투자자가 국내 기업의 자산을 인수하고 그 자산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당해 자산을 운영할 경우

## 다. 안전심사 내용

- (1) 인수합병 거래가 국방안전에 주는 영향(국방에 필요한 중국내 제품 생산능력, 중국내 서비스 제공능력 및 관련 설비시설에 대한 영향)
- (2) 인수합병 거래가 국가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에 주는 영향
- (3) 인수합병 거래가 사회기본생활질서에 주는 영향
- (4) 인수합병 거래가 국가안전과 관련된 핵심적인 기술연구개발능력에 주는 영향

## 라. 안전심사 주체

발전개혁위원회 및 상무부로 구성된 연석회의가 안전심사를 담당합니다. 발전개혁위원회 및 상무부는 국무원의 지도하에 연석회의에서 안전심사를 실시합니다.

## 마. 안전심사 절차

- (1) 외국투자자가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상무부에 안전심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sup>3</sup>
- (2) 연석회의는 인수합병 안전심사에 대해 일반심사를 하고, 일반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특별심사를 진행합니다.
  - ① 상무부는 안전심사 범위에 포함되는 인수합병 거래인 경우 5 근무일 이내에 연석회의에 보고하여 심사하도록 합니다.
  - ② 연석회의는 상무부로부터 인수합병 안전심사 신청을 받은 후 5 근무일 이내에 서면으로 유관기관으로부터 서면의견을 받습니다.

- ③ 유관기관은 연석회의로부터 서면의견 요청을 받은 후 20 근무일 이내에 서면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 ④ 유관기관이 모두 해당 인수합병이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연석회의는 서면의견을 받은 후 5 근무일 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고 서면으로 상무부에 통지합니다.
- (3) 연석회의는 유관기관이 해당 인수합병이 국가안전에 영향을 끼친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의견을 접수한 후 5 근무일 내에 특별심사를 진행합니다.
- ① 연석회의는 특별심사를 하면 해당 인수합병에 대한 안전평가를 실시하여 특별심사를 진행합니다.
- ② 의견이 일치할 경우 연석회의가 심사의견을 발표하고, 의견상 중대한 불일치가 있을 경우 국무원이 결정합니다.
- ③ 연석회의는 특별심사를 진행한 날로부터 60 근무일 내에 특별심사를 완료하거나 국무원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4) 외국투자자는 심사과정에서 거래방안을 수정하거나 인수합병 거래를 취소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바. 안전심사 후 조치

연석회의는 외국투자자의 중국내 기업 인수합병이 국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또는 줄 수 있는 경우 상무부와 기타 유관기관과 함께 당사자의 거래를 중지, 관련 지분·자산을 양도하거나 기타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해당 인수합병이 국가안전에 주는 영향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3. 평가

중국정부가 안전심사제도 통지를 제정한 이유는 중국이 유치한 외자 가운데 M&A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질 전망이므로 M&A를 감독할 새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미 중국은 조선·통신 등 핵심 전략산업에 대해 외국인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을 50%까지 한정했고, 2008년 반독점법을 제정하여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M&A를 간접적으로 제한하였는데, 2011년 안전심사제도 통지를 제정하여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기업이 중국기업에 대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한 M&A를 통해 중국 내에서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sup>4</sup>

또한,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통지는 중국정부가 일부 지방정부의 지나친 정책혜택을 통한 잘못된 외자유치 방식을 개선하고, 자원, 에너지, 하이테크 등의 분야에서 외국투자자들의 진입을 제한하여 중국기업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정부는 외국자본투자 안전심사 제도는 세계적인 관례일 뿐 해외투자에 장벽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외자유치의 정책법규 체계완비, 투명도/예견가능성 증대, 외자 M&A의 질서를 발전시키는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안보 이유를 들어 중국기업의 미국기업 M&A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보복의도도 있고, 중국의 국가 이익에 손상을 줄 수 있는 M&A를 사전에 저지하는 동시에 최근 급증하는 해외 자본 유입을 줄이겠다는 조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전심사제도 통지는 안전심사의 범위 및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안전심사시 전국업계협회, 경쟁기업의 의견까지 수렴할 수 있어 중국내 경쟁업체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인수합병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경영판단과 이미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여하였는데, 인수합병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안전심사를 위해 최대 3~4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이미 인수합병 거래를 완료하였는데 안전심사 결과 허용되지 않을 경우 그 거래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은 외국투자자의 중국기업 인수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중국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으로서는 안전심사제도 통지의 내용과 절차를 미리 파악해야 하고, 상무부에 안전심사 신청을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실제로 중국정부가 안전심사 제도를 어떻게 시행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1) 외국투자자의 중국기업 인수합병이 고정자산투자, 국유자산과 관련될 경우 각 규정(국가 고정자산투자관리규정, 국가국유자산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국내 금융기구 인수합병에 대한 안전심사는 별도로 규정합니다.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2) 외국투자자의 실제지배권 취득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 ① 외국투자자 및 그 모회사, 자회사가 인수합병을 통해 총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할 경우
- ② 다수의 외국투자자가 인수합병을 통해 총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할 경우
- ③ 외국투자자가 인수합병을 통해 총 지분의 50%미만을 보유하더라도 의결권이 주주총회, 동사회의 결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 ④ 기타 중국내 기업의 경영결정, 재무, 인사, 기술 등에 관한 실제지배권이 외국투자자에게 이전된 경우

3) 국무원 유관기관, 동종기업 등이 외국투자자의 중국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해 안전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무부에 인수합병 안전심사 진행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고, 연석회의가 인수합병 안전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실제로 최근 중국은 2008년 칼라일이 중국의 기계장비업체인 쉬공을 인수하려던 것을 불허하였고, 2009년 코카콜라가 중국의 음료업체인 후이위안 지분을 인수하려던 것을 반대하였으며, 2007년 세계 최대철강업체인 아르셀로미탈의 동팡그룹 지분인수를 반대하였고, 러시아 레브라츠그룹이 싱가포르에 상장한 중국의 더룽홀딩스 지분인수도 반대하였습니다.

Jipyong & Jisung

(Vietnam LIVE!)

## 정관 자본금 납입 기한 규정 엄격해져...



김주현 변호사

베트남 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안(Decree 102-2010-NP-CP)이 2010년 11월 15일부터 발효되어 시행되었는데, 개정안의 내용 중 정관 자본금 납입기한에 대한 규정이 보다 엄격해져서 베트남 투자 시 반드시 유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기업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2인 이상 유한회사 또는 1인 유한회사의 경우, 정관 자본금을 언제까지 납입하여야 하는 지, 납입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투자허가기관에서 투자허가서를 발급해줄 때에도 유한회사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정관 자본금 납입기한을 정해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러한 정관 자본금 납입기한을 아예 기재하지 않고 투자허가서를 발급해준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허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정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원 또는 소유자에 대해 어떠한 제재를 가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관자본금 납입기한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도 상대적으로 느슨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 시행령에서는 유한회사의 경우의 정관자본금 납입기한을 명확히 하고, 자본금 납입을 이행하지 않은 사원에 대한 제재 규정, 그리고 그러한 자본금 납입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2인 이상 유한회사 또는 1인 유한회사의 사원 또는 소유자가 약속한 정관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할 기한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또는 지분권자의 증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가 또는 변경 등록 후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 납입이 1회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마지막 자본금 납입이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는 각각의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러한 자본금 납입 사실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납입기한 내에 자본금 납입이 완납되지 않고 일부만 이루어진 경우, 실제 납입한 자본금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가질 수 있고, 이익분배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 납입의 최종 기한 이후에도 자본금 납입을 일체 하지 않은 사원의 경우, 자동적으로 사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권리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납된 자본금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마지막 자본금 납입 기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원들이 기 납입한 자본금의 비율에 따라 미납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입한다. 사원중 한명 또는 여러명이 미납된 자본금을 완납한다.

제3자로 하여금 미납 자본금을 납입하도록 한다.

그리고 회사의 대표는 미납 자본금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미납자본금의 처리기한인 90일이 도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베트남 정부에서는 회사의 자본금 납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투자사업의 활성화 및 기업의 내실화를 다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기업 설립을 검토할 때, 특히 2인 이상 유한회사의 형태로 합작기업(JVC) 설립을 검토할 때 위와 같은 자본금 납입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Jipyong & Jisung](#)

(¡Hola! 중남미)

## 브라질 현지법인 설립에 관하여 : 법인 형태 결정 및 입지 선정



이유경 변호사

### 1. 들어가면서

한국 투자자들이 브라질에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지사를 두는 방식보다는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며, 현지설립 방식 중에서도 유한책임회사(Sociedade Limitada: LTDA.) 또는 주식회사(Sociedade Anônima: S.A.) 설립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2011년 2월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한바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브라질법상 유한책임회사(LTDA.)와 주식회사(S.A.)의 차이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또한 법인설립방식과 관련하여 단독법인과 합작법인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법인설립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결정해야 하는 입지선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 보겠습니다.

### 2. 유한책임회사(LTDA.)와 주식회사(S.A.)의 차이점

두 회사 모두 사원 또는 주주가 원칙적으로 자신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납입이 예정된 자본금을 한도로 한 유한책임만을 부담하는 점, 설립단계에서 2인 이상의 사원 또는 주주를 필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요로 하는 점, 특별한 최저자본금 규정이 없는 점 및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S.A.)에 요구되는 법정준비금의 적립의무, 설립자본금의 최소 10% 현금납입의무, 최저배당 요건(순이익의 25%), 이사회 설치의무, 설립정관 공고의무 등이 유한책임회사(LTDA.)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및 운영상의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LTDA.)가 주식회사(S.A.)에 비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LTDA.)는 회사채 및 증권발행이 금지되나 주식회사(S.A.)는 자유롭게 발행이 가능하여 외부로부터의 자금 유치가 용이하다는 점, 유한책임회사(LTDA.)의 경우 납입되지 않은 자본금에 대해서 사원 전원이 공동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유한책임회사(LTDA.)의 경우 인적회사로서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 양도시 정관의 개정을 요하나 주식회사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유한책임회사가(LTDA.)가 주식회사(S.A.)보다 유리한 사업형태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법인형태는 회사의 목적, 회사 운영상의 특이점, 자금조달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 3. 단독법인과 합작법인의 차이점

합작법인이란 현지의 파트너와 합작계약(Contrato de Joint Venture)을 통해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현지진출과 관련하여 단독법인 형태를 취하기에는 사업권, 생산시설, 유통망, 물류망, 현지정보, 행정기관과의 관계 등에 있어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계약을 통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합작법인 형태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작당사자들의 역할 및 지분 결정, 경영권 관련 세부사항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합작투자계약의 내용을 협상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회사의 기술 및 기업비밀이 공개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 현지에서 자금 수취만을 목적으로 한 사기성 거래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어 현지 파트너 회사에 대한 꼼꼼한 실사가 요구되고, 외국기업과의 합작계약인 만큼 브라질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브라질 독점규제법, 관

런 인허가 절차, 구체적인 실사 등과 관련하여 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협상과정 및 계약체결과 관련하여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현지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합작법을 설립하는 대신 단독법을 설립하고 브라질 현지경영인을 채용하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LG 브라질 법인은 최근 진출 14년만에 처음으로 현지인을 부사장(Vice-presidente)로 임명하였습니다.

## 4. 입지의 선정

구체적인 법인설립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사의 입지를 결정하는 것은 법인형태를 결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브라질은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고, 부족한 철도와 노후된 도로가 주요 운송수단인 관계로 물류 인프라가 다소 열악한 편입니다. 따라서 소비지와 원재료 공급 경로 등을 입지 선정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 브라질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인 만도는 공장입지를 정할 때 부품을 공급하려고 하는 업체인 현대자동차(30km)와 GM 공장(20km)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공장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용수, 전력, 인력, 노조 관계, 환경, 정부 인허가 문제, 토지 확보방안 등과 관련하여서도 꼼꼼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가령 외국법인이 지방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연방헌법상 취득의 규모 및 취득목적 등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습니다(Artigo 190 da Constituição Federal, Artigos 3 e 12 da Lei no. 5.709/71. 연방헌법 제190조, 법률 5709/71호 제3조, 제12조).

아울러 연방정부 또는 주/시정부에서 토지, 조세, 금융 등과 관련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를 유치하는 주정부나 시정부의 경우 투자 규모에 따라 토지를 무상지원하거나 무상 장기 임대를 하기도 하고, 임대기간 만료 시 기업에게 매입권을 부여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5. 맺으며

구체적인 법인형태와 공장입지 등이 결정되면 브라질 진출과 관련한 큰 틀은 짜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인의 운영 방식과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부터 청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브라질 현지의 회사운영실무에 대한 고려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호 뉴스레터부터는 법인 설립 절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브라질 현지에서의 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Jipyong & Jisung](#)

(한경비즈니스 기고문)

##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비즈니스 국제면 기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 면에 정기적으로 브라질, 중국, 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일본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월간 지평지성 뉴스레터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달의 기고]

한경BUSINESS

No. 793 | 2011. 2. 16.



이행규 변호사

[hglee@jipyong.com](mailto:hglee@jipyong.com)

[Global 트렌드]

라오스 증권시장 오픈

### 한 · 라오스 자본시장 협력 기대 높아져

라오스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켰다. 2010년 10월 10일 한국거래소와 합작 법인 형태로 출범한 라오스증권거래소(LSX:Lao Securities Exchange, [www.lsx.com.la](http://www.lsx.com.la))가 1월 11일 국영기업 라오스국제상업은행(BCEL)과 라오스전력청(EDL) 산하의 EDL 제너레이션 퍼블릭 컴퍼니(EDL Gen)의 상장을 완료하고 매매 거래를 시작했다. 사실 지난해 라오스증권거래소가 출범할 당시까지만 해도 세계 각국은 과연 기업공개(IPO) 경험이 전혀 없는...

PDF

e-Link



이승민 변호사

smlee@jipyong.com

[Global 트렌드]

러시아 전력산업

### 송배전망 정비 등 현대화에 1조 달러 투자

러시아 모스크바 남동쪽 외곽의 도모데도보 국제공항에서 1월 24일 오후(현지 시간) 자살 폭탄 테러로 강력한 폭발이 발생해 210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 사상 최악의 테러로 기록된 이번 사건으로 러시아는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날 러시아 주가지수인 MICEX 지수는 장중 1.91% 떨어졌고 RTS(러시아증권거래소) 지수는 1.54% 하락했다. 러시아 5년 국채 기준 크레디트디폴트스왑(CDS)은 1월 25~26일 연속 올라 불안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PDF](#) [e-Link](#)



정철 변호사

cjeong@jipyong.com

[Global 트렌드]

브라질 자동차 시장

### 세계 자동차 메이커 '각축장' 부상

현대자동차는 2월 25일 브라질 상파울루에 자동차 생산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 등 대형 자동차 부품 업체 등도 함께 브라질 진출을 준비 중이다. 현대자동차의 브라질 진출은 1990년대 아시아자동차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아시아자동차는 브라질 진출을 모색했다가 중단했다. 아시아자동차는 기아자동차를 거쳐 현대자동차에 인수되었으니 브라질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려는 첫 시도에서 본격적인 공장 건설까지 상당한 시일이 ...

[PDF](#) [e-Link](#)



한승혁 호주변호사  
shhan@jipyong.com

[Global 트렌드]

베트남 M&A 시장

### ‘유년기’ 단계...기업 투명성 높아져야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중반까지 베트남 경제의 최대 화두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었다. 베트남은 WTO 가입의 전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투자 관련 법제 정비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데 힘썼다. 그 결과 2007년 1월 WTO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됐다. 이후 세계 금융 위기가 확산되기 이전인 2008년 말까지 베트남은 그야말로 외국인 투자의 황금기를 맞았다. 이 시기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는 자본금 규모와 프로...

[PDF](#) [e-Link](#)

####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소개]

-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소개 (홈페이지)
-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소개 (PDF)

Jipyong & Jisung

(주목! 이 판례)

## 장래 예금채권 가압류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전부금】

### 1. 판결의 취지

(1)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는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2)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이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에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 2. 사실관계

A는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은행 등 6개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가압류할 채권을 표시하고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청구금액 25억 원정,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 나. 당좌예금
- 다. 정기예금
- 라. 정기적금
- 마. 별단예금
- 바. 기타 제예금

이후 A는 지급명령을 받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면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압류결정 송달 당시 B가 C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은 37만원 뿐이었고, 가압류 송달 이후에 190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빠져나갔습니다.

A는 가압류결정 이후 입금분(190억원)에 대하여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C은행을 상대로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3. 판결의 요지

(1)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그 권리의 특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장래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느냐 여부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가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도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가압류명령상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3)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가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문언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아 이 사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가압류할 채권에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될 당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위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금액이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예금채권이 포함됨은 분명하다. 그러나 나아가 위 문언의 기재로써 이 사건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까지 포함하여 가압류되었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예금채권까지 가압류의 대상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4) 가압류할 채권에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까지도 가압류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 상관습법이나 사실인 관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4. 판결의 의의

(1) 압류를 위해서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5조). 통상 예금채권을 (가)압류할 때 본 사안과 같이 (가)압류할 채권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법원에서 그대로 압류명령을 발령하고 있습니다.

그간 하급심 판례는 본 사안과 같이 가압류할 채권을 특정한 사안에서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03. 6. 27. 선고 2003나1755판결. 위 판결은 상고 되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습니다(2003. 10. 9. 선고 2003다39156)]. 대상 판결의 원심(서울고등법원 2007. 12. 21. 선고 2007나30135 판결)도 동일한 입장이었습니다.

대상판결은 본 사안과 같이 가압류할 채권을 표시한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에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2) 그러나 대상판결이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이 언제나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압류할 채권을 어떻게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특정하느냐에 따라, 즉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이 보았을 때 가압류 명령 송달 이후 새로 입금되는 예금도 가압류의 대상이라고 해석될 정도로 특정하였다면,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대상 판결은 새로 입금될 예금채권이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 가압류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예금채권은 채무자가 장래 어느 시점에 얼마의 예금을 입금할 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부정설의 논거도 '채무자가 장래 입금할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은 장래 발생할 채권인데, 이러한 장래채권이 피압류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내용의 확정 가능성이 그 발생이 어느 정도 확실하여야 할 것인데, 채무자가 장래 입금할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장래 어느 시점에 얼마의 예금을 예입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상판결은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이 언제나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경우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어떤 경우가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인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향후 이와 관련한 사례가 좀 더 축적되면 법원의 판단 기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전부금](#) [Jipyong & Jisung](#)

(최신법령)

## 1. 「상법」 개정법률

1.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 합자조합을 신설하고(제86조의2내지 제86조의9), 사원에게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설립·운영과 기관 구성 면에서 사적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는 유한책임회사를 신설하였습니다(제287조의2내지 287조의45).
2. 무액면주식을 도입하여 회사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중 한 종류를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게 되었고,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제291조, 제329조, 제546조).
3. 회사가 특정 사안에 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등 다양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344조 내지 제346조).
4. 주권과 사채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한 후 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도 권리의 양도, 담보의 설정 및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를 도입하였습니다(제356조의2, 제478조 제3항).
5. 발행주식총수의 95퍼센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수주주도 지배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360조의24내지26).
6. 이사와 회사 간 자기거래의 요건을 더욱 엄격히 규정하여 이사뿐만 아니라 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들의 개인회사가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까지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거래의 내용이 공정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제398조).
7.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의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 이내로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면제할 수 있도록 이사의 책임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제400조 제2항).

8. 이사회에 감독하에 회사의 업무집행을 전담하는 기관인 집행임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되, 제도의 도입 여부는 개별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408조의2 내지 제408조의9).
9. 근래 기업회계기준의 변화를 상법의 회계기준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왔는바, 회사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르도록 원칙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구체적인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들을 삭제하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외한 서류들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회계규범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제446조의2, 제447조, 제447조의4 등).
10. 자본금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준비금을 배당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제460조, 제461조의2).
11. 정관에서 배당에 관한 결정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배당 외에 현물배당도 허용하였습니다(제462조 제2항, 제462조의4).
12. 사채의 발행총액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이익배당참가부 사채 등 다양한 형태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수탁회사의 권한 중 사채관리 기능 부분을 분리하여 사채관리회사가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제469조, 제481조 내지 제485조 등).
13.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 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도록 하였습니다(제542조의13).
14. 다운로드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430호, 2011. 9. 8. 시행)

1. 적용 대상을 공공·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였습니다(제2조).
2.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제15조 내지 제22조).
3.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영상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제25조).
4.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지·신고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인지한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때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제34조).
5.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제40조 내지 제50조).
6. 개인정보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여, 동일·유사한 개인정보 소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였습니다(제51조 내지 제57조).
7. 종전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만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부과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 기관, 기업 모두가 법률상 개인정보보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지·신고제도의 도입과 함께 개인정보집단분쟁조정제도 및 개인정보단체소송제도가 인정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8. 다운로드 : [개인정보 보호법안\(대안\)](#) [Jipyong & Jisung](#)

(지평지성 단신)

## 이춘원 변호사, International Law Office(ILO) 주관의 'Client Choice Awards 2011'에서 한국 내 Shipping & Transport 분야의 Winner로 선정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춘원 변호사)

지평지성 이춘원 변호사가 International Law Office(ILO)가 주관하는 'Client Choice Awards 2011'에서 한국 내 Shipping & Transport 분야의 Winner로 선정되었습니다.

2011년 한국에서는 Shipping & Transport 분야와 IP 분야만이 순위에 랭크되었고, 그 중 이춘원 변호사가 Shipping & Transport의 winner로 선정되었습니다.

'Client Choice Awards 2011'은 전세계 기업의 사내 변호사들 중에서도 특히 시니어급 이상의 고객 2,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각 분야별로 그 해의 winner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링크]

- [International Law Office 웹사이트](#)
- [International Law Office - Client Choice Guide 2011: Lee, Choon-Won \(이춘원 변호사 프로필\)](#) [Jipyong & Jisung](#)

(지평지성 단신)

## 최승수 변호사, 한국영상산업협회 주관의 '저작권법 개정 에 관한 세미나' 토론 참석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최승수 변호사)

지평지성 최승수 변호사는 지난 3월 11일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주관하고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된 '저작권법 개정 에 관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와 저작권단체연합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약 100여 명의 저작권 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저작권법 제 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 [관련링크]

- 아크로팬 - 한국영상산업협회, 저작권법 개정 촉구 (2011. 3. 11.)
- 디지털데일리 - "현재의 저작권법, 현실성 없어" (2011. 3. 11.) [Jipyong & Jisung](#)

(영입인사)



이공현 대표변호사  
leekh@jipyong.com

## □ 학력사항

-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미국 Harvard Law School LL.M.(법학석사)
- 미국 Harvard Law School Visitng Scholar(Fulbright Fellow)

## □ 경력사항

- 제13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기 수료
- 서울민·형사지방법원 판사
- 대구고등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 대법원장 비서실장
- 서울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 법원행정처 차장
- 사법개혁위원회 부위원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대표변호사



##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헌법재판관직을 퇴임하고,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진취성과 역동성에 공감하여 대표변호사로 합류하게 된 이공현 변호사입니다.

1973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한 이래 서울민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고등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근무하였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으로 다년간 민사신청사건을 재판한 경험, 미국 Harvard Law School 에서 유학하고, 연구한 경험, 그리고 유럽평의회 산하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업무, 헌법 등 공법분야 및 국제거래 등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ipyong & Jisung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영입인사)



김형수 변호사

kimhs@jipyong.com

## □ 학력사항

- 경기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 경력사항

- 사법연수원 제13기 수료
- 육군 법무관
- 광주지방법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판사, 민사부 판사, 특별부 판사
-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조정위원
- 주식회사 포스코 등 고문변호사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변호사

##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파트너변호사로 일하게 된 변호사 김형수입니다.

저는 서울법대(77학번)를 졸업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한 후 순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고객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던 강경운, 한재철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지평지성 순천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평소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가치로 삼고있는 '인간중심', '진정성', '고객지향' 및 '사회공헌' 등에 공감을 하고 있었고, 그동안 개인 변호사로서도 같은 가치를 신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파트너변호사로서 그동안의 판사,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순천, 여수, 광양 등 호남지역에 오실 때 편하게 찾아주시면 따스한 정이 담긴 녹차와 식사를 대접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Jipyong & Jisung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영입인사)



강경운 변호사

gwkang@jipyong.com

## □ 학력사항

- 진주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법경제학)

## □ 경력사항

-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 순천시의회, 보성군 고문변호사
- 순천농업협동조합 고문변호사
- 현 순천시가곡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고문변호사
- 현 주식회사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문변호사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변호사

##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파트너변호사로 일하게 된 변호사 강경운입니다.

저는 서울법대(84학번), 서울대 법과대학원을 마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한 후 순천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순천, 여수, 광양 등 호남지역의 기업을 비롯한 고객들에게 종합적이고 전국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김형수, 한재철 변호사와 함께 순천에서 법무법인 지평지성 순천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사무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순천, 여수, 광양 등 호남지역의 기업을 비롯한 고객들에게 그동안의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소송업무는 물론 기업자문, 국제계약, M&A, 금융, 증권, 지적재산권, 건설,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부동산, 공정거래, 노동, 조세, 환경, 해상, 보험 등 전문적인 자문업무와 함께 호남지역만이 아니라 서울 등 전국 각지의 소송업무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파트너변호사로서 그동안의 판사, 변호사로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전문화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하오니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ipyong & Jisung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영입인사)



한재철 변호사

hanjcl@jipyong.com

## □ 학력사항

- 전남 정광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 경력사항

-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 청주지방법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 광양시법원 판사, 광양시선거관리위원장, 광양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 여수시, 여수시의회, 여수세무서, 순천세무서 고문변호사
- 현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순천지점 소송위임변호사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변호사

##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한재철 변호사입니다.

저는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한 후 판사로 임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2월경 변호사로 개업한 후에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요구에 충실하며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최상의 법률전문가들이 모여 고객에 대한 헌신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에 합류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들의 법률수요에 맞춰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로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ipyong & Jisung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영입인사)



구나영 변호사  
nykoo@jipyong.com

## □ 학력사항

-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 제7회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 경력사항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구나영 변호사입니다.

2011년 제4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3월부터 지평지성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선배님들 밑에서 법조인의 첫 발을 내딛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인생의 분기점에서 최고의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늘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지평지성 식구들과 고객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성품과 실력을 함께 길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ipyong & Jisung





지평지성  
JIPYONG & JISUNG

<http://www.jipyong.com>

## 법무법인 지평지성

### 주사무소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Tel : 02)6200-1600 Fax : 02)6200-0800

### 순천 분사무소

(540-330) 전남 순천시 왕지동 870-1 금강타워 3층 Tel : 061)724-2001 Fax : 061)725-7604

###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Tel : 02)6200-0880 Fax : 02)6200-0804

### 상해 사무소

Room 2310, Shanghai Maxdo Center, No. 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 86-21-5208-2800 Fax: 86-21-5208-2807

### 호치민 사무소

#1605, Centec Tower, 72-74 Nguyen Thi Minh Khai Street, Ward 6, District 3,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3910-7510 Fax: 84-8-3910-7511

### 하노이 사무소

Suite 1003, 10th Fl.,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 Ba Dinh Dist., Hanoi, Vietnam Tel: 84-4-6266-1901 Fax: 84-4-6266-1903

### 캄보디아 사무소

SK-Shinah Office, 2F No.797, Monivong Blvd. & St. 484, Phsar Doeum Thkov, Khan Chamkarmon, Phnom Penh, Cambodia Tel : 855-23-726-897 Fax : 855-23-726-457

### 라오스 사무소

LLC Bldg, Nongbone Road, Saysetha District, Vientiane, Laos Tel : 856-20-2301-9820 Fax : 856-21-264-344